

# 팩트체크와 언론의 자유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 정치적 팩트체킹 (political factchecking)의 기원

# 트럼프 대통령 공약 검증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Politifact website. At the top, the logo reads 'POLITIFACT WINNER OF THE PULITZER PRIZE'. Below the logo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EDITIONS', 'TRUTH-O-METER™', 'PEOPLE', 'PROMISES', 'PANTS ON FIRE', and 'ABOUT 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Trump-O-Meter' and features a yellow progress bar. The entry is titled 'Open up libel laws' and includes a quote: 'I'm going to open up our libel laws so when they write purposely negative and horrible and false articles, we can sue them and win lots of money.' The progress bar is labeled 'TRUMP-O-METER' and 'STALLED'. Below the quote, it lists 'Sources: A campaign rally in Fort Worth, Texas' and 'Subjects: Transparency'.

트럼프 후보는 2016년 2월 유세 중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명예 훼손법의 적용을 확대해 언론이 부정적/거짓 기사를 썼을 경우

소송을 걸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고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공약.

- 이 공약에 대해 정치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는 2016년 4월, 실현이 어렵다(stall)고 팩트체크.
- 1964년 연방대법원이 당시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 경찰 책임자였던 설리반이 뉴욕타임스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른바 ‘설리번 판결’이 근거.
- 여기에 더해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주마다 내용이 다르고 연방 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훼손법 확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것.

# 설리번 판결 이전의 명예 훼손과 '언론의 자유'

- 수정헌법 1조와 권리 장전이 언론 자유(freedom of speech and press)를 보장한 것과 달리, 현실은 선동법(Sedition Act, 1798) 제정으로 선동적 명예 훼손(seditious libel)이 인정될 경우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었음.
- 미국 언론사는 뉴욕 주지사를 비판했던 인쇄업자 Zenger가 선동적 명예 훼손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방면된 것을 수정헌법 1조의 승리로 기록하지만, 20세기 전반까지 미국에서는 보도가 아닌 의견으로 공인을 비난했을 때조차 명예 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비난이 사실에 입각했을 때도 사실성 입증의 책임이 언론에 있었음.

# NEW YORK TIMES 대 SULLIVAN 판결 (1964년)

- 공인보도와 명예 훼손에 관해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른 획기적인 판결.

- 앨라배마에서 벌어진, 흑인 인권 운동을 돕기 위한 모금형 광고에 쓰인 뉴욕타임스 사설에 여러가지 오류가 포함됨.

당시 앨라배마 경찰책임자였던 설리반이 이를 근거로 명예 훼손이라며 소송 제기.



-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연방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이승선, 2007)

“공무원이 자기의 공직 업무에 관한 허위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그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즉,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거나 그것의 진위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보도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 연방대법원은 자유로운 토론에서 오류가 있는 발언은 불가피하며, 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인에 대한 비판을 처벌할 경우 공익에 관련한 발언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힘.
- 이 판결을 통해 공직자 뿐 아니라 공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언론보도 자유가 획기적으로 신장됨



# 공인이 거짓 말할 자유도 보장한 설리번 판결



**FACTCHECK.ORG** A Project of The Annenberg Public Policy

HOME ARTICLES ASK A QUESTION VIRAL SPIRAL ARCHIVES ABOUT US SEARCH

## Libel

### Suing Over False Political Advertising

February 7, 2008

**Q:** Can people be sued for false political advertising?

**A:** Targets of false ads rarely sue. Libel law makes it practically impossible for candidates to collect damages, even if they should win.

► [Click here to read more](#)

"Candidates have a legal right to lie to voters just about as much as they want."

‘거짓 정치광고를 했을 때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2008년 FactCheck.org 검증

# 거짓말 할 자유도 보장한 설리번 판결

- 설리번 판결은 언론의 공인보도에 관한 언론자유를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인이 공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음.
- 정치광고에서 상대 후보를 거짓 정보로 비방했을 경우에도 거짓 광고의 표적이 된 후보가 상대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광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
- 법률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소송 자체에 긴 시간 지체.  
예) 1964년 공화당 대선 후보 배리 골드워터가 잡지 FACT를 대상으로 벌인 명예훼손 소송은, 1968년에야 법정에서 다뤄지기 시작.

- 가짜 정치광고를 법률로 제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됨.
- 사실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막기 위해 언론이 기존의 받아쓰기 저널리즘(he says, she says)을 탈피해 진실의 판정자(arbiters of truth)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됨(Spivak, 2010).

- 1992년 CNN에서 〈Adwatch〉와 〈Factcheck〉 포맷 시작
- 200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FactCheck.org 창설
- 2007년 플로리다의 Tampa Bay Times가 독립언론 모델 PolitiFact.com 시작
- 2007년 워싱턴포스트 〈The Fact Checker〉 시작



# 정치적 사실검증을 둘러싼 한국의 환경

#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의 구분

- 우리 법원은 보도의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 관심사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그 보도가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박아란, 2015).
- 즉, 문제가 된 표현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일 때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으나,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 상당성을 잃은’

- 2003년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한층 더 두터이 보호하는 판결을 내놓음.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감시와 비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음(박아란, 2015).

-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언론사가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사실에 기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가 아닌 피고인 언론사가 입증책임을 갖고 있음.



# 공적인물, 공직자들의 언론 관련 소송 현황

공적 인물, 고위공직자가 원고인 언론관련 소송 건수(2014~2016)

(공적 인물에는 정치인, 전문인, 언론인, 연예인 등이 포함됨)

	고위공직자	공적인물	합계
2014	23(14.5%)	27 (17.0%)	50 (31.5%)
2015	25(11.6%)	38 (17.7%)	63 (29.3%)
2016	12(5.7%)	50(23.8%)	62 (29.5%)

출처: 언론중재위 발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2014~2016)

- 원고 유형에 따른 승소율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가 50.0%(전체 12건 중 6건), 공적 인물 44.0%(전체 50건 중 22건), 고위 공직자 승소율은 평균 승소율 44.8%보다 높음.
  - 단체로는 국가기관이 57.1%(전체 7건 중 4건), 지자체가 100%(전체 3건)로 단체 평균 승소율 50%보다 높았음.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고위공직자의 승소율은 46.7%(전체 15건 중 7건), 인용액 평균값은 9,428,571 원으로, 평균 승소율인 38.8%보다 승소율은 높았고, 인용액은 평균값인 38,435,419원보다 낮았음.

- 이 같은 통계는 한국에서는 언론 관련 소송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 같은 공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으며 국가기관도 언론 상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줌.

박아란(2015)은 이에 대해 공인과 국가기관의 언론 상대 소송은 일반인이 제기하는 소송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언론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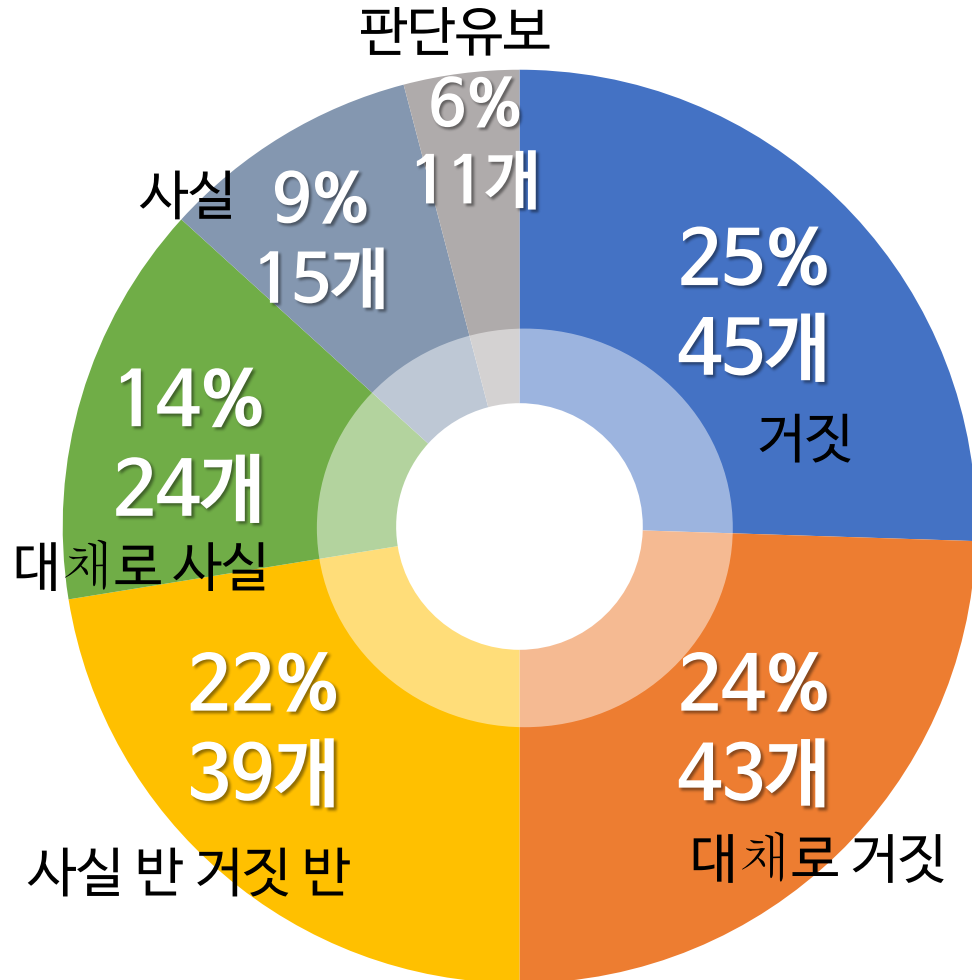
**SNU팩트체크 판정을 둘러싼 정치권 대응  
:제휴언론사와 SNU팩트체크를 중심으로**

# 19대 대선 기간 SNU팩트체크의 운영

〈3월 29일 ~ 5월 8일 제휴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현황〉

- 전체 배지 수 : 144개 (각 배지는 검증되는 팩트를 의미)
- 전체 검증 수 : 177개 (총 22개 배지에 2개 이상 언론사 교차 검증)
- 제휴언론사들(실제 참여 12개 사) 이 1일 평균 4.3개의 팩트 검증
- 참여언론사: JTBC, KBS, MBC, MBN, SBS, YTN, 동아일보 , 매일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 19대 대선 검증결과 (2017.3.29~5.8.)



- 177개 검증 팩트 중 88개(49%)가 ‘거짓’, 또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
- 반면, ‘사실’, 또는 ‘대체로 사실’은 39개(23%).
- 일부 사실 혹은 일부 거짓이 포함된, ‘사실반거짓반’은 39개(22%)

# SNU팩트체크 제휴사 대선검증 언론중재위 조정 건수

- SNU팩트체크의 제휴 언론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선기간 동안의 팩트체크 보도와 관련해 정당이나 정치인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11월 현재 총 19건.

이 중 조정 성립은 4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는 2건, 기각은 13건(68.4%)이었음.

기각의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보도, 의견표명’이었기 때문.

# SNU팩트체크에 대한 국정감사

- SNU팩트체크에 대한 국정 감사와 교육부 감사(2017. 10~11월)

2017년 국정감사 기간 자유한국당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며,

(1)SNU팩트체크의 설립 배경, (2)SNU팩트체크의 월별 세부운용내역, (3)SNU팩트체크 운영비 세부사용내역, (4)월별 제휴 언론사별 팩트체크 현황, (5)SNU팩트체크센터가 팩트체크를 실시했는지 여부, (6)선거기간 중 팩트체크 공표 가능한 지 여부 등에 관해 질의하여 답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추가 확인 감사할 것을 요구해, 11월말 확인 감사 자료 제출.

-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에 대한 법적 조치.



# SNU팩트체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 형사

- 공직선거법 위반(2017.10.31.)  
→ 11월7일 검찰 무혐의 처분
- 전기통신사업법

## 민사

- 명예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2017.11.4)  
언론정보연구소장, SNU팩트체크센터장,  
서울대 총장(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3인에 대해  
각 1억원 씩 소 제기.

# 민사 소송 제기의 요지

- 원고는 자유한국당으로서 민사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 조항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
- SNU 팩트체크 사이트 개설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런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를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원고가 경선 내지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원고에 대한 고의의 위법행위를 구성.

# SNU팩트체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요점

- 자유한국당은 19대 대선 기간 「SNU팩트체크」 활동과 관련해 서울대와 네이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검찰에 고발. 고발 당시 자유한국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 「SNU팩트체크」가 표면적으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매체들의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대선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
  - 또한 『서울대는 팩트체크를 시행하지 않았고, 실제 팩트체크를 시행한 기관은 언론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명칭에 서울대 영문약자를 사용하고 서울대 로고를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서울대가 직접 팩트체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

# 검찰의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의 요점 (1)

- 검찰은, 「SNU팩트체크」 사이트와 네이버의 「SNU 팩트체크」 코너에는 팩트체크 과정 및 주체가 개별 언론사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설사 「SNU팩트체크」라는 명칭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서울대가 해당 발언을 직접 검증한 것과 같이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 2017년 3월 29일 SNU팩트체크 사이트 출범 당시 팩트체크의 주체가 개별 언론사라는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

## 검찰의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의 요점 (2)

- 「SNU 팩트체크」에 게시되는 팩트체크 주제의 선정이나 그 내용은 언론사들이 정해 입력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입력하는 것이며, SNU 팩트체크센터는 그 선정이나 편집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
- 「SNU 팩트체크」 사이트와 네이버 「SNU 팩트체크」 코너에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거나 조사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전혀 없는 점
- 네이버 「SNU 팩트체크」 코너의 개별 발언의 허위 여부를 검증하는 관에는 검증을 한 개별 언론사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언론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들었다.

# SNU팩트체크의 사명

- SNU FactCheck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언론사와 대학이 협업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 공공 정보 서비스 모델로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웹 플랫폼을 마련하고, SNU FactCheck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이 플랫폼에 사실이 검증된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 SNU FactCheck는 팩트체크 서비스를 통해 유권자와 정보 소비자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NU FactCheck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 1) 공직자, 정치인 및 공직자 (예비)후보들이 토론, 연설, 인터뷰,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
    - 2) 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술의 사실성
    - 3) 그 외의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적 사안 전반을 검증합니다.

(SNU factcheck 'ABOUT'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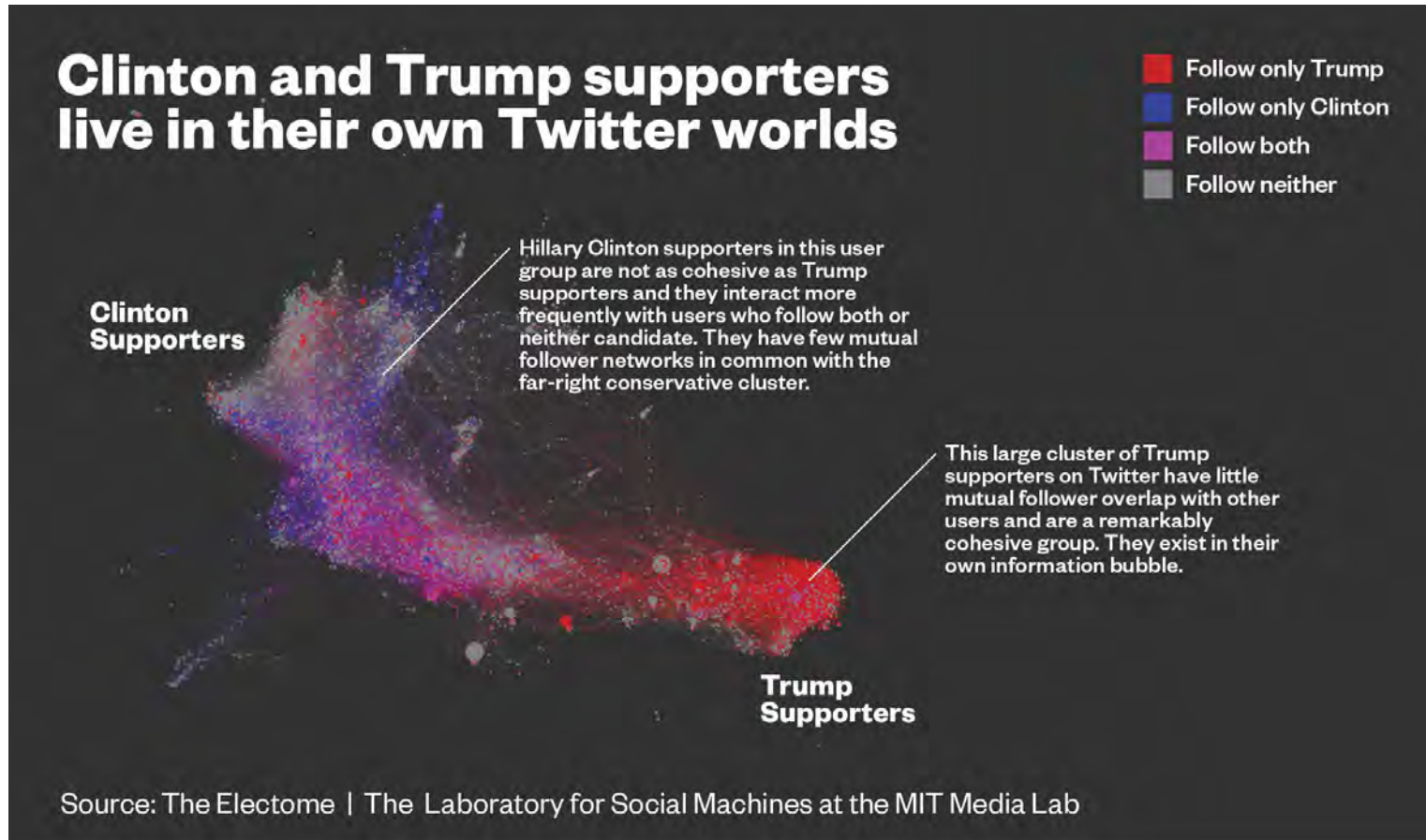
**팩트체크는 정치적 토론의 종결인가, 출발점인가**

# 팩트체크와 공론장 활성화

- 19대 대선 이후 팩트체크 기사에 대한 야당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이 잇따르자 한국기자협회는 8월1일 “언론에 대한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  
  
이 성명에서 기자협회는,  
“언론중재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당 대표는 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진위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요청.
- 이는 법의 판단이 아닌 공론장의 영역에서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토론을 활성화하자는 것으로서, 서로 상대의 주장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양극화된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제안.



#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의 가짜뉴스



-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는, 양 지지자들 사이에 소통이 없고, 서로 상대 진영에 유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인식
- 사실의 일부분만이 강조되거나 누락되면서 정치적 현실을 구성.
-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어려움.

#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 법제로 ‘허위의 정치적 사실’의 공표를 규제하겠다고 할 경우, 정치적 토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
- 2017년 3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을 중심으로 ‘페이크뉴스 대응책’ 발표됨. 페이크 뉴스를 무조건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억제책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지.
- 이러한 맥락에서 팩트체킹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페이크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됨(오세욱, 2017).

# 사실과 정치적 토론

“The trouble is that factual truth, like all other truth, peremptorily claims to be acknowledged and precludes debate, and debate constitutes the very essence of political life.”

(Arendt, 1967)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사실은 토론을 허용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삶의 핵심은 토론으로 구성된다’는 역설을 대면해야 함.

-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는 사실( shared reality)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회는 숙의(deliberations)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게 됨.
- “사실 확인은 주장에 대한 타당성 논쟁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 아닌 더 많은 논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주장을 검증하는 기사들 간의 경쟁이야말로 해당 주장의 사실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 (이준웅, 2017).

# 토론 규범 정착을 위한 SNU팩트체크 시스템 설계

## 01

동일 팩트에 대한  
교차검증 가능

참여 언론사들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교차 검증 가능.

결과는 입력 시간 순으로 병렬  
게시.

## 02

판정기준의 공유

정성적 평가이지만 판정의 틀을  
공유함으로써 언론사 간에 소통  
가능.

## 03

수정 결과의 투명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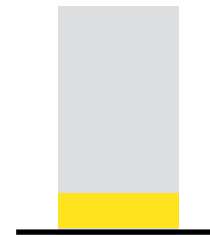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발견된 증거에 의해  
팩트체크 결과가 달라졌을 경우 수정  
가능

단, 수정 이력이 이용 화면에 표시되며  
수정 이유를 입력해야만 수정 완료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도 높아짐

# 19대 대선 기간 언론사 교차 검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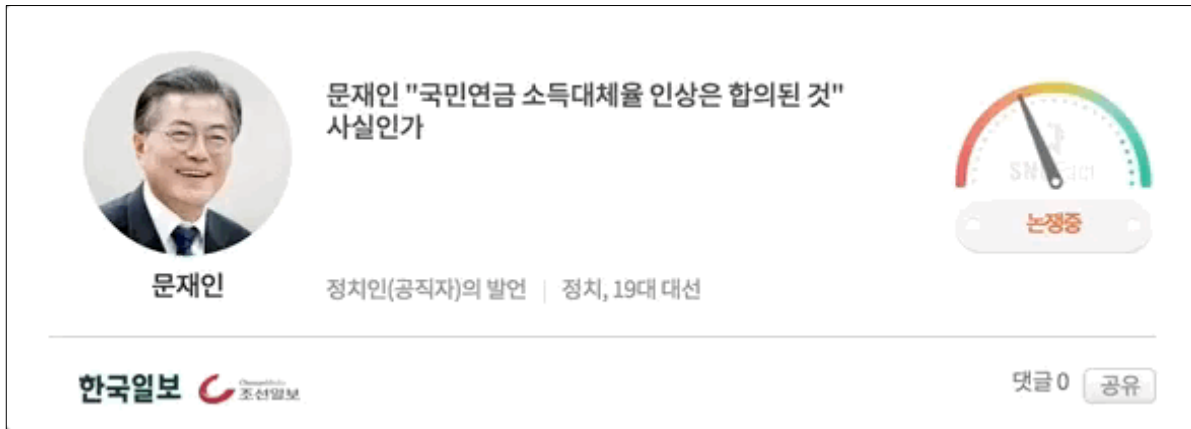
최신팍트	핫이슈
 <p>홍준표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p> <p>홍준표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정치, 19대 대선</p> <p>한국일보 ● YTN ● 조선일보 KBS ● 중앙일보</p> <p>댓글 0 공유</p>	<p>거짓</p>
 <p>유승민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는 발언, 사실은?</p> <p>유승민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정치, 국제, 19대 대선</p> <p>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p> <p>댓글 0 공유</p>	<p>대체로 거짓</p>
 <p>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자제할 계획인가</p> <p>안철수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정치, 19대 대선</p> <p>서울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p> <p>댓글 0 공유</p>	<p>거짓</p>



22개 (15.3%)

대선 기간(3월 29일 ~ 5월 8일) 검증된 144개 팩트 중 2개 이상 언론사가 하나의 팩트에 대해 교차검증한 숫자.

# 언론사 교차 검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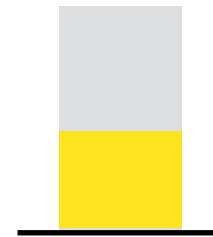
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 사실인가

문재인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5점 척도 판정: 논쟁중

한국일보 JoongAng Ilbo

댓글 0 공유



## 판정 일치 (45.5%)

- 교차검증이 된 22개의 팩트 중 서로 다른 언론사들의 판정이 일치한 것 : 10건

**전체 교차검증의 절반 수준인 45.5%의 판정이 일치**

- 5점 척도 판단에서 교차 검증한 언론사 간 판단이 3단계 이상 차이가 나서 '논쟁 중'이 된 팩트는 1개

# SNU팩트체크의 교차검증 시스템

하나의 팩트에 대해 서로 다른 검증의 과정에 노출되는 것은,  
뉴스 이용자들이 필터버블 (Pariser, 2012)에 갇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가 없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동일한 매체에만 선택적 노출을 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의견에도 노출됨으로써 의견의 극화를 완화하는 열린 광장(Sunstein,  
2001)으로 기능할 수 있다.



# SNU팩트체크 교차검증 시스템의 가능성

왜 특정 언론사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정한 팩트에 대해

다른 언론사는 ‘사실 반 거짓 반’이라고 판정했는지,

판정에 이르기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읽고 논리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정치적 관용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킨다는 공통의 목적 아래 언론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정은령, 2017)

# 팩트체크: 이견에 대한 포용과 수정 가능성

## PolitiFact의 편집방침

- **Pushback is inevitable.**  
: 검증 대상이 제기한 반론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
- **Admit mistakes; we're only human.**  
: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증대상과 독자들 앞에 명백히 드러내는 투명성을 팩트체킹의 규범으로 삼아 신뢰 확보.

# 팩트체크를 통한 저널리즘 실천윤리 강화 가능

## 1. 초당파성과 공정성에 대한 약속

한 쪽 진영의 팩트체크에만 집중하지 않으며,  
팩트체크하는 사안과 관련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2. 투명성에 대한 약속

가능한 자세하게 모든 자료출처(Sources)를 제공해  
뉴스 소비자들이 작업을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팩트체크의 목표. 이를 통해 뉴스  
이용자들의 신뢰 확보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  
Code of Principles 중

# 결론: 저널리즘 혁신과 정치적 토론 토대로서의 팩트체크

- 팩트체크는 양극화된 정치환경에서 시민들이 합리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쳐 사실인식에 이르는 정치적 토론의 토대가 될 수 있음.

정치권이 팩트체크를 적대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의를 말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는 노력 필요.

- 팩트체크는 언론사에게는 기존의 사실 검증 업무를 불편부당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

공익을 위한 언론사의 핵심 업무이지만 자원이 많이 소모되므로 언론사들이 이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사회가 힘을 보태야.

이러한 취지에서 팩트체킹 취재 지원사업 1차 시행

(심사 및 운영 :언론학회 SNU팩트체크센터, 재정지원: 네이버)

# 참고문헌

박아란 (2015). <미디어와 명예 훼손>. 커뮤니케이션북스.

오세욱 (2017). 자동화된 사실 확인(fact checking) 기술(technology)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3호, 137-180.

언론중재위원회(2016)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  
(2015)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  
(2014)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

이승선 (2007).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 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권 1호, 96-131.

이준웅 (2017, 5월). <정치현실과 사실검증 보도>. 19대 대선기간 언론사 팩트체크의 성과와 과제: SNU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서울:프레스센터

정은령 (2017). 팩트체킹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143, 19-25.

Arendt, H. (1967/2010). Truth and politics. Truth. Engagements across Philosophical Traditions, 295-314.

Pariser, E. (2012).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Penguin, UK.

Spivak, C. (2010). The fact-checking explosion: in a bitter political landscape marked by rampant allegations of questionable credibility, more and more news outlets are launching truth-squad operations. American Journalism Review, 32(4), 38-44

Sunstein, C.R. (2009).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감사합니다**